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여성가족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한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, 시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이 통보하는 다음 연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한을 10월 31일까지에서 11월 30일까지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을 11월 3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각각 늦추는 등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,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분석·평가를 위한 조사·분석 업무를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6. 18. ~ 7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0월 31일”을 “11월 3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1월 30일”을 “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10월 31일”을 “11월 3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효율적 분석·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분석·평가를 위한 조사·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을 위해 매년 <u>10월 31일</u> 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.	제3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11월 3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<u>11월 30일</u>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조(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등) ① (생략)	제4조(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 분석·평가 결과를 매년 <u>10월 31일</u>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11월 30일</u> ----- ----- -----.
<신설>	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추진실적

③ (생략)	<u>의 효율적 분석·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분석·평가를 위한 조사·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.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06